

1. 제정이유

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(2023.9.14. 법률 제19705호 / 시행 2024.9.15.)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전통문화산업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- 1) 교육 인력·시설·설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
- 2)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
- 3) 운영에 관한 사항

나. 전통문화산업 전담기관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- 1)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
- 2) 지정신청서 확인에 관한 사항

다. 전통문화산업 별지 서식에 관한 사항

- 1)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(서식)
- 2)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(서식)
- 3)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서(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기관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2024. 4. 16. ~ 5. 27.) 예정

2) 행정규제 : 규제심사중

- 제2조(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제출서류)

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전통문화산업 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) 「전통문화산업 진흥법」 제7조제2항 및 「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조제2항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설,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교육 인력·시설·설비의 확보 현황
2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및 교육 평가계획서
3.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
4. 교육 운영규정

제3조(전담기관의 지정 절차)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정관
2. 사업계획서
3.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
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발급해야 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60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
	대표자 주소	전화번호

사무소 소재지

「전통문화산업 진흥법」 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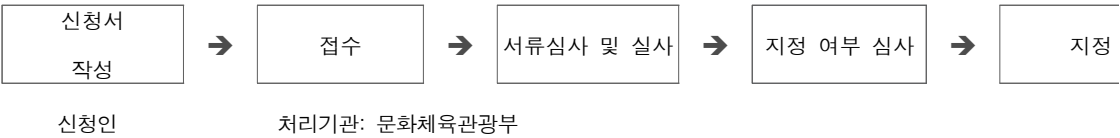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교육 인력·시설·설비의 확보 현황 2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및 교육 평가계획서 3.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. 교육 운영규정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[별지 제2호 서식]

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30일
신청인	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)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
	설립 연월일	전화번호
	주소	
	사무소 소재지	

「전통문화산업 진흥법」 제1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2. 사업계획서 1부 3. 「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	접수 처리기관 (문화체육관광부)	→	검토 처리기관 (문화체육관광부)	→	지정 처리기관 (문화체육관광부)	→	통지
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제 호

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:
2. 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):
3. 성 명(대표자): (생년월일:)
4. 주 소: (전화번호:)
5. 사무소 소재지:

「전통문화산업 진흥법」 제1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직인